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2021. 03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가.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내용을 관계행정기관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및 신문(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에 공고하고, 주민 공람 실시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구 분	내 용
사업명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 송산면 사강리
규 모	○지방도 305호선 연결도로 : 4.92km(왕복4차로) ○신천리간 연결도로 : 1.45km(왕복4차로)
사업시행기관	○한국수자원공사
공람·공고	○공고일시 : 2019년 03월 14일(목) ○공고신문 - 중앙일간지 : 한겨레신문 - 지방일간지 : 경기일보
공람기간	○2019년 03월 14일 ~ 04월 11일 (21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공람장소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화성시 송산면사무소 ○정보통신망 - 화성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주민설명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19년 03월 22일(금) 14:00 ○장 소 : 화성시 송산면사무소 회의실
주민의견 제출기한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

▶ 신문 공고

한겨레

hani.co.kr

5판 9636호 2019년 3월14일 목요일

화성시 공고 제2019 - 896호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 규정에 따라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3. 13.

화 성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 송산면 사강리
○ 규 모
- 지방도 305호선 연결도로 : 4.92km(왕복4차로), 설계속도 50~70km/hr
- 신천리간 연결도로 : 1.45km(왕복4차로), 설계속도 50km/hr
○ 사업시행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9. 03. 14 ~ 2019. 04. 11
○ 공람장소 :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화성시 송산면사무소
○ 정보통신망 : 화성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 03. 22(금) 14:00
○ 장 소 : 화성시 송산면사무소 회의실

4. 주민공람 내용

○ 제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에 관한 의견 등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기후환경과(☎031-369-6712), 한국수자원공사(☎031-412-1356)로 문의바랍니다.

한겨레신문

경기일보

kyeonggi.com

음력 2월 8일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화성시 공고 제2019-896호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 규정에 따라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13.

화 성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 송산면 사강리
○ 규 모
- 지방도 305호선 연결도로 : 4.92km(왕복4차로), 설계속도 50~70km/hr
- 신천리간 연결도로 : 1.45km(왕복4차로),설계속도 50km/hr
○ 사업시행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9. 03. 14 ~ 2019. 04. 11
○ 공람장소 :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화성시 송산면사무소
○ 정보통신망 : 화성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 03. 22(금) 14:00
○ 장 소 : 화성시 송산면사무소 회의실

4. 주민공람 내용

○ 제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에 관한 의견 등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기후환경과(☎031-369-6712), 한국수자원공사(☎031-412-1356)로 문의바랍니다.

경기일보

▶ 관계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공고

화성시청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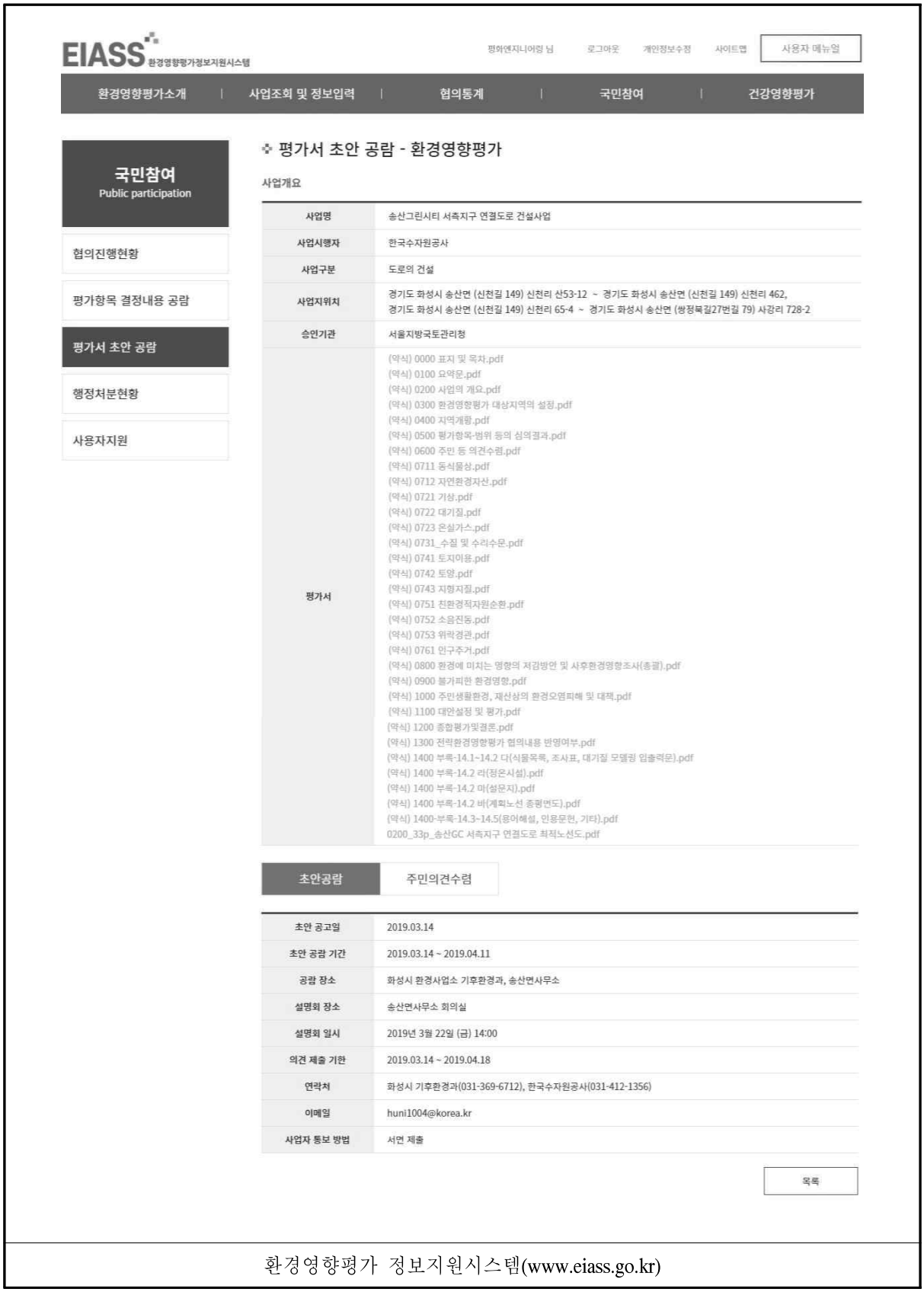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나. 주민설명회 개최

○ 개요

구 분	내 용
주민설명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19년 03월 22일(금) 14:00 ○장 소 : 화성시 송산면사무소 회의실
참석자	○총 89인(참석자명부 참조)
설명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 설명 ○주민 질의 및 답변 등

○ 주민설명회 개최사진

○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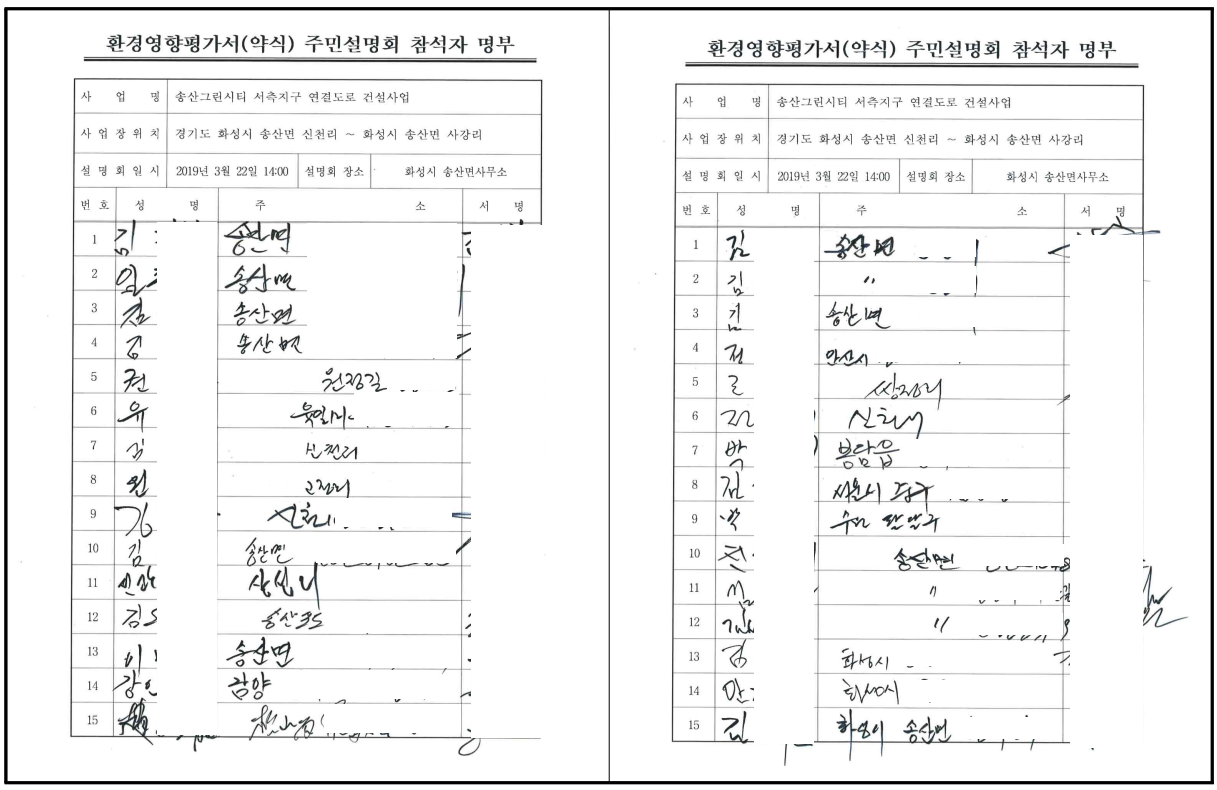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사 업 장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설 명 회 일 시	2019년 3월 22일 14:00	설명회 장소	화성시 송산면사무소

번 호	성 명	주 소	서 명
1	김	송산면	
2	임	송산면	
3	김	송산면	
4	김	송산면	
5	권	원정길	
6	유	육일사	
7	김	신천리	
8	원	신천리	
9	김	신천리	
10	김	송산면	
11	신	상신리	
12	김	송산면	
13	이	송산면	
14	강	감양	
15	[illegible]	[illegible]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사 업 장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설 명 회 일 시	2019년 3월 22일 14:00	설명회 장소	화성시 송산면사무소

번 호	성 명	주 소	서 명
1	김	송산면	
2	김	〃	
3	김	송산면	
4	김	안산시	
5	김	쌍정리	
6	김	신천리	
7	박	봉담읍	
8	김	서울시 중구	
9	박	수원 팔달구	
10	김	송산면	
11	김	〃	
12	김	〃	
13	김	화성시	
14	안	화성시	
15	김	화성시 송산면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계속)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사 업 장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설 명 회 일 시	2019년 3월 22일 14:00	설명회 장소	화성시 송산면사무소

번 호	성 명	주 소	서 명
1	손	쌍정리	
2	김	송산면 〃	
3	변	송산면	
4	윤		
5	이	〃	
6	김	송산면	
7	최	송산면	
8	이	안산시 상록구	
9	이	연수구	
10	강		
11	김	송산면	
12	김	송산	
13	김	송산	
14	문	송산	
15	홍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사 업 장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설 명 회 일 시	2019년 3월 22일 14:00	설명회 장소	화성시 송산면사무소

번 호	성 명	주 소	서 명
1	김	마도면	
2	이	송산면	
3	이	송산면	
4	최	송산면	
5	신	송산면	
6	지	송산면	
7	이	〃	
8	이	송산	
9	홍	사강	
10	박	득지2리	
11	이	송산면	
12	조	쌍정리	
13	한	송산	
14	이	〃	
15	유	송산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사 업 장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설 명 회 일 시	2019년 3월 22일 14:00	설명회 장소	화성시 송산면사무소

번 호	성 명	주 소	서 명
1	박	수동	
2	최	화성시 송산면	
3	유	송산면	
4	인	송산면	
5	신	〃	
6	이	사강	
7	김	송산면	
8	정	천등리	
9	김	신천리	
10	홍	사강	
11	이	쌍정리	
12	강	송산면	
13	임	〃	
14	성	〃 〃	
15	제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사 업 장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설 명 회 일 시	2019년 3월 22일 14:00	설명회 장소	화성시 송산면사무소

번 호	성 명	주 소	서 명
1	조	송산면	
2	심	송산면	
3	조	송산면	
4	김	송산면	
5	이	송산면	
6	송	〃	
7	정	〃	
8	정	〃 사강리	
9	원	삼존리	
10	조	〃 중송리	
11	신	송산면	
12	이	〃	
13	정		
14	이		
15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제4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약식)에 대한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 등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주관 시장이 사업자에게 통지한 주민 등 의견 : 주민 의견, 주관 시장(화성시) 의견

구 분	내 용	비 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민 의견이 주관 시장에게 제출됨
	②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주관 시장에게 통보된 의견 없음
	③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주민 의견 및 제3항에 의한 주관 시장 의견이 사업자에게 통지됨

▶ 주민 등 의견 통지 공문 및 내용(1)

화성 제암, 고주리 순국선열 29인의 애국정신을 함께 기억합니다.

화성시환경사업소

수신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경유)
제목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 관련 주민의견 제출서 송부

1. 시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약식평가서)」 관련 주민의견 제출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업 추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의견제출서 2부(별송). 끝.

환경사업소장 (화성시환경사업소장인)

주무관 박상훈 기후변화팀장 박태열 기후환경과장 전결 04/25 차성훈
협조자
시행 기후환경과-12975 (2019.04.25.) 접수 시화사업처-@N ( )
우 18588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3층, 환경지도과 / http://www.hscity.go.kr
전화 031-369-6712 /전송 031-369-1713 / huni1004@korea.kr / 비공개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
사업장 위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 송산면 사강리
사업자	한국수자원공사
의견제출자	성명 이 / 생년월일 / 주소 인천광역시 / 전화번호
평가서에 관한 의견	<불필요한 부체도로 신설로 인한 환경 오염 유발 요인 언급되 있지 않음> - 지방도 305호선 연결도로에 붙어 있는 부체도로 #8과 부체도로#7 연결 과정에 불필요한 연결 구간인 언덕 위 (신천리 456-1) 토지를 빙 돌아서 도로가 설계되어 있는데 이 주변 토지들은 언덕위로 올라오는 부체도로 이용이 필요없는 구간이며 부체도로 #7 야산 아래로 나란히 있는 기존도 도로를 이용한 부체도로는 비면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통행 가능하며 농기계 및 자동차 운행으로 대기중 오염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화성시에서는 위 부체도로 #8 일부 신설로 인한 환경 오염 물질 발생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 철저히 주시길 원해 바랍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작은 부분도 철저히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년 4 월 5 일

제출자 이

화성시장 귀하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
사업장 위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 송산면 사강리
사업자	한국수자원공사
의견제출자	성명 유 / 생년월일 / 주소 경기도 화성시 / 전화번호
평가서에 관한 의견	교통량이 많은 시간 ⑯⑮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년 3 월 14 일

제출자 유

화성시장 귀하

▶ 주민 등 의견 통지 공문 및 내용(2)

개인정보보호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화성시환경사업소

수신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경유)
제목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 관련 협의 회신

1. 시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약식평가서)」 관련 협의 회신 및 주민의견 제출서(추가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업 추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검토 의견(화성시) 1부
2. 주민의견제출서(추가분) 1부. 끝.

환경사업소장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인

주무관 박상훈 기후변화팀장 박태열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전결 05/27)
협조자

시행 기후환경과-17165 (2019.05.27.) 접수 시화사업처-6N ( )
우 18588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3층, 환경지도 / http://www.hscity.go.kr
전화 031-369-6712 /전송 031-369-1713 / huni1004@korea.kr / 비공개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연결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 화성시 검토 의견

관련부서	법령 또는 관련팀	검토 결과
기후환경과	환경영향평가법 (기후변화팀)	◦ 사업시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 발지 및 민원 해소방안 포함)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바, 도로 포장재 및 배수관 품목 등에 대하여 녹색제품(순환아스콘, 미끄럼방지포장재 등)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대기관리팀)	◦ 해당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생활환경)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해당하는 경우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공사(변경)신고를 사전에 필하시기 바람.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서 제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미세먼지법) 제18조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은 주민피해는 물론 인근 도로가 토사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설로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장 주변에는 필히 인력을 배치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살수차를 고정 배치하여 도로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항시 유지할 것임. ◦ 동 도로포장공사 소음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민원인 피해지역에는 (이동식) 흡음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 설치 및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 사용 등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내지 공법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특히 파일설치를 위한 작업은 향타기 대신 필히 오거 작업등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소음진동관리법 (교통환경팀)	◦ 도로 운영시 교통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증가되는 교통량 예측까지 실시하여 교통소음저감대책을 종합적(방음효율, 경관미관 등 고려)으로 강구 시행하시기 바람.

수질관리과	물환경보전법 (수질총량팀)	◦ 동 사업지역은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인 사업으로 당초 총량 협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협의 된 오염부하량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단, 아래와 같은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사유 발생 시,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재협의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 또는 동법 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등의 대상일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일 경우 3.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퍼센트 이상 확대된 경우
	물환경보전법 (수질관리팀)	◦ 의견없음
	물환경보전법 (수질환경시설팀)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별도 협의 요망
	자연환경보전법 (생태환경팀)	◦ 동 사업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지 감소가 발생함에 따라 생물서식처 공간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호종등이 분포할 경우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물서식처 공간 이전 또는 동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태환경)	◦ 의견없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의견없음
	청소관리팀	◦ 의견없음
	자원관리팀	◦ 의견없음
	자원순환시설1팀	◦ 의견없음
	자원순환시설2팀	◦ 의견없음
도시정책과	도시정책팀	◦ 의견없음
	도시시설팀	◦ 의견없음
	지구단위팀	◦ 의견없음

대중교통과		◦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초기입주 전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지방도 305호선과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내부도로 연결시 시·종점부 평면교차로 처리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람(필요시 부분입체교차 처리 요망) ◦ 서측지구 연결도로 구간내 기존 마을안길과의 효율적으로 접속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재도로 설계 바람
지역개발과	공영개발팀	◦ 의견없음
	택지개발팀	◦ 의견없음
	복합도시개발팀	◦ 의견없음
	신도시팀	◦ 의견없음
	지원도시사업팀	◦ 의견없음
도로과	도로행정팀	◦ 사업시행자는 터파기 공사 중 토사 등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현장 측중기 설치 지침」에 의거 측중기 설치 및 공사계약 시방서에 과적방지 명기사항 반영 ◦ 사업시행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규정에 따라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등)를 이용하는 건설공사차량(덤프, 카고트럭 등)은 운행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제한기준 :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0m, 너비 2.5m, 길이 16.7m 이하 운행 ◦ 운반차량은 운행경로 및 운행시간을 지정하여 운행하고 출·퇴근 시간대(07~09시, 18~20시) 피하여 운행(경로이탈 금지)
	도로1팀	◦ 의견없음
	도로2팀	◦ 의견없음
	도로3팀	◦ 의견없음
	도로과(도로보수팀)	◦ 기존 마을 안길 및 현황도로, 농기계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시기 바람
	도로구조물팀	◦ 의견없음

▶ 주민 등 의견 통지 공문 및 내용(3)

	가로정비팀	◦ 보도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도설치 및관리지침」에 의거 유효폭(2.0m)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도에 지장물(가로등, 가로수 등) 설치시에도 유효폭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2. 보도설치 도로표지판 및 보행자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볼라드, 휀스등)에 대하여 사전에 도로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도로점용(건축물 진출입구간)구간은 도로점용 관련부서를 도로시설물 인수인계후 도로점용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로에 매설되는 지하시설물(지하매설물 관련지상시설물 포함)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 허가(협의) 대상으로 인수인계시 매설현황자료를 필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팀	◦ 도로교통법에 의거 교통안전시설(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기준의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설치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도로 공사시 포장공법은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설계기준에 준하여 설치하되,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구간은 측방여유폭, 식수대를 제외하고 폭은 3.5m 이상으로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행정재산관리팀	◦ 의견없음
	하천관리팀	◦ 의견없음
	기반조성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사업(농로, 배수로, 관정, 저수지등) 저촉시 농경지 통행·농업용수의 이용 및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등을 설치계획 수립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하수시설팀	◦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시기 바라며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함.
	하수정비팀	◦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로 오수를 유입하고자 할 경우,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득하시기 바람.
	물관리팀	◦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접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오수관리	◦ 해당없음

주민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		
사 업 장 위 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 송산면 사강리		
사 업 자	한국수자원공사		
의 견 제 출 자	성 명 조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평가서에 관한 의견	1. 도로의 고도가 7~6m 이라는데 자연의 경사면에서 볼때 지나치게 높게 설계되어 주위 농지와 환경이 부적합 2. 마을 안길 박스터널 설치는 가능한 일이지만 고등관이 지나치게 낮음 3. 신천리 833, 832-1, 830-1, 834-2, 842-2의 약 1000평 정도는 수용 가능하나 834-1, 831, 830-2 토지 수용은 동의 할수 없음 이유 잔여토지가 농지로서 가치상실되기때문 4. 도로의 고도를 낮추고 옹벽설치를 할 수도 있다는데 잔여 토지의 가치가 상실되며 농사 짓기 부적합 5. 주택 수용자에게 이주 대책 강구 주거를 해결 해주기 요망 6. 근본적으로 노선 변경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년 3 월 22 일

제출자 조

화성시장 귀하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제출된 주민 등 의견은 없음(2019.04.18. 기준)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주민 등의 의견 반영여부

가. 주민의견

○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 주민 공람 등을 통하여 주관 시장에게 제출된 의견은 총 3건이며, 이에 따른 반영여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견을 제출한 주민 3인 중 1인이 공청회를 요구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제시된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구 분	주 민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이○○	○ 불필요한 부체도로 신설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요인 언급되어 있지 않음 ○ 지방도 305호선 연결도로에 붙어 있는 부체도로#8과 부체도로#7 연결 과정에 불필요한 연결 구간인 언덕 위(신천리 456-1) 토지를 빙 돌아서 도로가 설계되어 있는데 이 주변 토지들은 언덕 위로 올라오는 부체도로 이용이 필요 없는 구간이며 부체도로#7 야산 아래로 나란히 있는 지적도 도로를 이용한 부체도로를 내면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통행 가능하며 농기계 및 자동차 운행으로 대기중 오염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화성시에서는 위 부체도로#8 일부 신설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발생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 정정해 주시길 선처바랍니다	○ 본 계획노선(부체도로 포함)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였으며, 계획노선 공사 및 운영시 환경오염물질 발생 및 영향 최소화를 위해 최적의 저감방안을 시행토록 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시 해당 토지 소유지의 주민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 결과, 민원인이 요청한 지적도 도로를 활용하여 민원인의 토지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음(2019.03.22.) ○ 이후 민원인을 포함하여 민원인 소유 토지 주변의 소유주들이 부체도로#8의 삭제를 요청하여(2019.11) 실시설계 시 부체도로#8을 삭제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음 ○ 또한, 신천리 457전 외 8필지를 우회 통과하는 노선은 연속 배향곡선(S-Curve)설치로 평면선형이 매우 불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선형을 계획하였음	

▶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계속)

구 분	주 민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유○○	○교통량이 많은 사진 ⑯, ⑮(송산그린시티 ~ 지방도305호선 STA.3+870~4+920)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주민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임	
조○○	○도로의 고도가 6~7m이라는데 지형의 경사면에서 볼 때 지나치게 높게 설계되어 주위 농지와 환경에 부적함	○본 계획노선은 대부분 성토구간으로 주요 성토구간은 신천리교차로 인근(지방도305호선 및 신천리간 연결도로 접속부)으로 당초 종단선형이 높게 형성되었으나, 종단선형을 하향 조정하여 성토량 및 성토고를 최소화 하였음	
	○마을 안길 박스터널 설치는 마을 안길이지만 교통량이 지나치게 많음	○마을진입로 지점을 평면교차로로 적용할 경우, 기존 지방도305호선과 접속되는 교차로 간격이 320m(최소간격기준 L=280m)로 근접되고, 신설 지방도305호선의 종단경사(S=6.55%) 및 교차로구간 본선의 종단경사 기준 미달로 부득이 통로암거로 계획하였음(본선종단경사 6%이내, 평면교차로 구간 본선 종단경사 기준 3%이내, 부득이한 경우 6%)	
	○쌍정리 833, 832-1, 830-1, 834-2, 849-2의 약 1,000평 정도는 수용가능하나, 834-1, 831, 830-2 토지 수용은 동의할 수 없음 이유는 잔유 토지가 농지로서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 ○도로의 고도를 낮추고 옹벽 설치를 할 수도 있다는데 잔여 토지의 가치가 상실되어 농사에 부적함 ○근본적으로 노선 변경	○도로가 개설되는 구간의 토지편입이 불가피하므로 토지점유대상 주민의 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여, 관계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토록 할 계획임	

나. 화성시 의견

○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에 대한 주관 시장(화성시) 의견 및 반영여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화성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구 분	검 토 의 견 (화성시)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기후 환경과	○사업시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방지 및 민원 해소방안 포함)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추가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별도의 추가 저감대책(민원 방지 및 민원 해소방안 포함)을 강구·시행하겠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바, 도로 포장재 및 배수관 품목 등에 대하여 녹색제품(순환아스콘, 미끄럼방지포장재 등)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도로 포장공에 사용되는 골재는 순환골재(동상방지층, 보조기층)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해당하는 경우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공사(변경)신고를 사전에 필하시기 바람	○공사 시행 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특정공사(변경)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함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서 제출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미세먼지법) 제18조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서 제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를 화성시에 제출하겠음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은 주민피해는 물론 인근 도로가 토사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설로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장 주변에는 필히 인력을 배치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살수차를 고정 배치하여 도로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항시 유지할 것임	○공사 시행시 비산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차량의 진·출입부에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을 설치, 인력을 이용한 도로청소, 주기적 살수실시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 화성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계속)

구 분	검 토 의 견 (화성시)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기후 환경과	○도로포장공사 소음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민원인 피해지역에는 (이동식) 흡음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 설치 및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 사용 등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내지 공법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특히 파일설치를 위한 작업은 항타기 대신 필히 오거 작업등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공사시 소음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방음시설, 일작업시간제한, 투입장비 강도 조절(대수 최소화), 저진동 장비 사용 등의 소음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또한, 교량기초 공사시 주변에 위치한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도로 운영시 교통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증가되는 교통량 예측까지 실시하여 교통소음저감대책을 종합적(방음효율, 경관미관 등 고려)으로 강구 시행하시기 바람	○운영시 최대로 증가되는 장래 교통량(2024년)을 반영하여 교통소음을 예측하고, 소음 영향이 예상될 경우 방음벽 설치, 저소음포장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수질 관리과	○동 사업지역은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인 사업으로 당초 총량 협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협의 된 오염부하량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단, 아래와 같은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사유 발생 시,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재협의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1.「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 또는 동법 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등의 대상일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사업일 경우 3.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퍼센트 이상 확대된 경우	○본 사업지역은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으로 총량 협의 사항을 준수하고, 협의 된 오염부하량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음 ※ 총량협의 완료 : 2019.05.14. (화성시 수질관리과-10370) ○향후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사유 발생 시,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재협의를 선행하겠음	

▶ 화성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계속)

구 분	검 토 의 견 (화성시)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수질 관리과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별도 협의 요망	○실시계획 승인완료 후 60일 이내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함	
	○동 사업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지 감소가 발생함에 따라 생물서식처 공간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호종등이 분포할 경우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물서식처 공간 이전 또는 동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동식물상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주변 야생 동식물의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교형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및 생태측구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	
대중 교통과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초기입주 전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초기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본 도로 사업을 진행토록 함	
	○지방도 305호선과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내부도로 연결시 시·종점부 평면교차로 처리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람(필요시 부분입체교차 처리 요망)	○지방도 305호선과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내부도로 연결구간의 교차로는 처리용량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교차로 계획을 수립하였음	
	○서측지구 연결도로 구간내 기존 마을안길과의 효율적으로 접속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체도로 설계 바람	○기존 농경지 통로 구간 및 마을안길과 효율적으로 접속될 수 있도록 부체도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	
도로과	○사업시행자는 터파기 공사 중 토사 등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의거 축중기 설치 및 공사계약 시방서에 과적방지 명기사항 반영	○축중기 설치, 공사계약 시방서에 과적방지 명기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법 이행될 수 있도록 함	
	○사업시행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규정에 따라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등)를 이용하는 건설공사차량(덤프, 카고트럭 등)은 운행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제한기준 :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0m, 너비 2.5m, 길이 16.7m 이하 운행	○관련 규정(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하여 건설공사차량 운행제한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함	
	○운반차량은 운행경로 및 운행시간을 지정하여 운행하고 출·퇴근 시간대(07~09시, 18~20시) 피하여 운행(경로이탈 금지)	○운반차량은 운행경로 및 운행시간을 지정하여 운행하고 출·퇴근 시간대(07~09시, 18~20시)를 최대한 피하여 운행토록 함	

▶ 화성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계속)

구 분	검 토 의 견 (화성시)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도로과	○기존 마을 안길 및 현황도로, 농기계 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시기 바람	○단절예상 구간을 충분히 검토하여 통로암거, 교량, 부체도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	
	○보도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도설치및관리지침」에 의거 유효폭(2.0m)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도에 지장물(가로등, 가로수 등) 설치시에도 유효폭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보도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폭 3.3m이상)로 계획하였으며, '식수대+경계석' 구간(폭 0.2~1.2m)을 별도 확보하였음	
	○보도설치 도로표지판 및 보행자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볼라드, 휀스등)에 대하여 사전에 도로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설치 도로표지판 및 보행자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볼라드, 휀스등)에 대하여 사전에 도로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음	
	○도로점용(건축물 진출입구간)구간은 도로점용 관련부서를 도로시설물 인수인계후 도로점용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진출입구간 등의 도로점용 구간에 대하여 본 의견에 제시한 대로 이행토록 함	
	○도로에 매설되는 지하시설물(지하매설물 관련 지상시설물 포함)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 허가(협의) 대상으로 인수인계시 매설현황자료를 필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허가 등 절차를 이행토록 함	
	○도로교통법에 의거 교통안전시설(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기준의 경우「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설치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	
	○자전거도로 공사시 포장공법은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설계기준에 준하여 설치하되,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겸용도로의 포장은 자전거의 주행성 외 보행자의 공용성과 장기적인 유지관리측면을 고려하여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적용함	

▶ 화성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계속)

구 분	검 토 의 견 (화성시)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 고
도로과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설치구간은 측방여유폭, 식수대를 제외하고 폭은 3.5m 이상으로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는「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폭원을 결정하였으며, 송산도시계획 구간 연도변 지장물 저촉 등을 고려하여 3.3m 이상 폭원으로 계획하였음	
건설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사업(농로, 배수로, 관정, 저수지등) 저촉시 농경지 통행·농업용수의 이용 및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등을 설치계획 수립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경지 통행, 농업용수의 이용 및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암거, 배수관, 수로 등의 시설물을 계획하였음	
하수과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시기 바라며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함	○공사시 현장사무소에 발생하는 오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 후 방류토록 함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로 오수를 유입하고자 할 경우,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득하시기 바람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로 오수를 유입하고자 할 경우,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절차를 이행토록 함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접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사업지역의 배수체계와 송산그린시티 개발로 인한 배수체계를 고려한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인접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